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 입찰 전 유의사항
- 당사(코리아신탁)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매매에 해당합니다. 본 공고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 여부는 공고상 기재함) 대상 부동산은 해당 공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발생일과는 관계없이 체납관리비 포함)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낙찰 이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코리아신탁) 단독 판단으로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공매공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이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조건을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매목적부동산

연번	소재지	면적(㎡)	
		토지	건물
1	[별지1 참조]		

주1) ①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부등본(신탁원부)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상 압류나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재산세 등 본 공매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당해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당사가 매매대금 정산 시 본 공매대금에서 이를 납부합니다. **③신탁 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개념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공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④본 공매의 매각방법은 **개별매각**입니다.

2. 입찰기간 및 입찰가격

회차	입찰기간	개찰시간	입찰가격 (원)				입찰 및 개찰 장소 (공매장소)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VAT포함)	
[별지3 참조]							온비드

주2) 최초 입찰가격은 감정평가액 대비 116% 이며, 전회차 공매가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 예정가격은 전회차 공매예정 가격에서 10% 차감됩니다.
주3)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4) 공매가 최종 유찰된 경우 우선수익자인 파주중앙새마을금고의 수의계약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날(영업일 기준)의 17:00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주5)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 (명도 책임,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2. 제한권리현황 참조)
주6) 부동산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포함)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2) 공매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코리아신탁(주) 홈페이지(www.ktrust.co.kr)
3) 문 의 처 : 코리아신탁(주)[☏ 02) 6190-3833, 02) 6190-3879]
4) 입찰방법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6)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7) 개 찰 : 상기 일정에 따라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및 ②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10) 기 타 :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일 2차수 공매진행 시에는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 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나.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파주중앙새마을금고(☏031-942-7233)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 ②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날(영업일 기준)의 17:00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유찰일 기준 6개월 이내 수의계약 가능).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금액은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낙찰 취소의 경우 수의계약 불가)

2)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일시, 물건, 금액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가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여도 수의계약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응찰 전에 반드시 당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신청서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수의계약 신청서류"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서류는 수의계약 체결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은 매수희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입금계좌로 수의계약 체결 전까지 선입금하여야 합니다.

※ 1. 수의계약 신청서류

① 수의계약 매수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②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위임장(대리인에 한함) 1부
⑤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⑥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계약 체결일에 납부 가능)
⑦ 기타 수의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2. 수의계약 보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4-319747 (예금주 : 코리아신탁)

4) 동일 물건에 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들을 대상으로 당사 및 (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최고가 접수자를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5) 2인 이상 매수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후 수의계약 낙찰자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들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이자 없이 5영업일 이내에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6) 단, 나. 수의계약 조항의 1)~5)호에도 불구하고 본 공매목적 부동산의 **제한권리현황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은행 간 계좌이체 한도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은 타행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가상계좌 발급은행인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취소 또는 낙찰자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조건

가. 계약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1층, 코리아신탁(주)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가 14일 이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를 이행하고, 최고를 고지 받은 자(낙찰자 또는 매수인)의 이행(계약체결 등)이 없는 경우, 낙찰을 무효(취소)로 하고 입찰보증금(온비드 수수료 포함)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단, 계약체결일은 낙찰자 및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를 1회 이상 최고하고, 납부를 요청한 기일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계약금(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되는 등의 위약금 귀속 및 해지 이행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납부 예정일 도과일로부터 납부일 까지 미납금액에 연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가 단독 판단으로 계약체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 물건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으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통지를 받은 때에는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라. 본 공매목적 부동산은 담보신탁의 목적물로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탁자인 당사가 세금계산서(공급 받는 자 : 매수인)을 발행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어 당사에 귀속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대금납부방법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고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계약 시 아래와 같이 계약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공통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6. 공매참가조건

가.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해제 포함)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인지세 신고 등에 대한 책임(과태료 포함)을 부담합니다.

나.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대차,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등 포함)들의 정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사항(임대차 관련 승계, 강제퇴거, 민·형사상 문제 및 명도단행 등) 등을 사유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조사(현장 및 공부조사 등)를 충분히 이행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라. 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인 승계 및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입니다(당사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당사는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바. 매수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공매목적 부동산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신탁사)는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잔금납부기한 만료일과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당해세는 당사(신탁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지급하고, 그 이후 당해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매목적 부동산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쓰레기, 산업폐기물 포함)의 명도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공매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행정 관청의 건물 철거명령으로 인하여 철거책임(이행강제금, 벌과금 등 제비용 부담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하여 공매 목적 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는 경우 등 공매 목적 부동산의 물리적·법적·행정적 현상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별지 1에 표기된 지번 및 면적은 신탁 등기된 담보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기준입니다.

7. 유의사항

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나.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공매목적 부동산 중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물건의 행정상 규제,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 미등기건물, 기계기구 등의 구조·규격·품질·수량·면적 등이 입찰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제3자 소유의 타워크레인, 가설자재 등 임대장비나 임대자재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필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 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1)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
2)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3)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5)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6)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7)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8)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9)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무단점유 등)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10) 권리관계 말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자.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할 수 있고, 공매 목적 부동산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목적 부동산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민법상 무효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매매대금 등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

카. 공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 세대(호)별 매매대금 완납하였음을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타.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등 제반행정절차를 거

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당사에 공매 목적 부동산을 위탁한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파.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 공매 관련 내용은 당사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본 공고와 매매계약서 조항에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용하기로 합니다.

2022. 11. 25.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지1] 부동산 목록

□ 부동산 목록

연번	소재지	동	호	지목/용도	전유면적	토지지분
1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101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102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201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301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302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1	402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2	비01	근린생활시설	216.2556	191.5153
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2	202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2	301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10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2	302	도시형생활주택	84.6899	75.0010
11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1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2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3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4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5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비06	근린생활시설	135.2000	119.7331
1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103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1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105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1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201	도시형생활주택	68.5914	60.7442
20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203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21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204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2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205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2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302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2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305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2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402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2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403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2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404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2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3	405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2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4	501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30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5	203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31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5	205	도시형생활주택	56.9174	50.4058
3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5	504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3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201	도시형생활주택	74.5361	66.0088
3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305	도시형생활주택	71.7533	63.5444
3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405	도시형생활주택	71.7533	63.5444
3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501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3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502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3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6	504	도시형생활주택	74.8500	66.2868
3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202	도시형생활주택	74.9234	66.3518
40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203	도시형생활주택	78.4284	69.4559
41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204	도시형생활주택	69.9533	61.9503
4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205	도시형생활주택	82.5593	73.1142
4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206	도시형생활주택	75.9618	67.2714
4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304	도시형생활주택	69.9533	61.9503
4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402	도시형생활주택	74.9234	66.3518
4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403	도시형생활주택	76.4735	67.7246
4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503	도시형생활주택	83.5473	73.9891
4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12 디자인뷰	107	506	도시형생활주택	76.3595	67.6236
합계					4,166.2382	3,689.6051

[별지2] 소송 및 채권 보전 현황

□ 소송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가(원)	비고
없음						

□ 채권보전처분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비고
2020타채528034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권**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57,065,565	
2020타채529180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권**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56,644,356	
2020카단107505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코*****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148,971,000	
2021카단100019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태*****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810,835,430	
-	-	재산압류통지서	서귀포시장	코리아신탁		58,264,320	재산세
-	-	재산압류통지서	서귀포시장	코리아신탁		48,257,200	재산세
2021타채5566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김**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283,847,671	
2021카단30030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세***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외	457,000,000	
2021타채9910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명*****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17,753,400	
2021타채10624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987,417,352	
2021타채557898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함**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203,040,87	
2021타채11708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995,013,825	
2021타채559355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윤**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60,715,249	
2021타채559648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박**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10,542,045	
2021타채563400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함**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204,802,373	
2021타채13004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천**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111,246,515	
2021타채13007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	김광순	코리아신탁	350,000,000	
2022타채1445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32,278,032	
2022타채3045	인천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칠****~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37,645,490	
2022카단289	서울남부지법	채권가압류	이**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130,000,000	
2022타채3763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칠****~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2022타채531770	인천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	디자인주택건설	코리아신탁	31,523,178	
-	-	채권압류통지서	연수세무서	코리아신탁		479,065,410	부가세,소득세

※ 매수인은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공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은 누락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과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포함).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가 납부의무자인 체납 당해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교통유발부담금)은 매매대금에서 신탁사가 납부할 예정이오나, 2021년도부터 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 미납금 및 해당 당해세 미납으로 인하여 신탁물건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기납부한 매매대금(입찰보증금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매 공고 이후,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 등 제한권리현황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현황

호실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임대차 현황 (기준일 : 2022.11.22)	비고
101-201	이**	2022-06-13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2-202	이**	2022-05-12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3-103	임**	2022-06-09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3-105	이**	2021-05-20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3-402	박**	2022-06-29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4-501	공**	2021-04-30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5-205	김**	2022-08-08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6-405	장** / 안**	2021-12-06 / 2022-02-07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7-203	최**	2020-09-03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107-205	최**	2020-12-30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거주중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입주자, 거주자 등 일체 포함)들의 정리는 **매수인 책임**(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반환 포함)으로 합니다. 또한 처분부동산내 임대차, 분양계약 등의 이해관계자 존재시 매수인은 해당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임대차, 분양계약

등 조건의 승계(또는 이해관계자 강제퇴거, 민·형사상 문제 및 명도단행 등) 등 임대차, 분양계약 등 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매각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물건 중 소유자인 당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미상의 전입세대(또는 전입신고 없는 거주자가 존재할 수 있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특히, 공매목적 부동산 중 당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을 주장하는 수분양자(현재 거주중인 것으로 추정됨)가 존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 총 5세대 / 103동 103호, 103동 105호, 103동 402호, 105동 205호, 106동 405호]

[별지3] 입찰기간 및 입찰가격

□ 입찰기간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입찰기간	2022.12.05. (10:00~13:00)	2022.12.05. (13:00~16:00)	2022.12.06. (10:00~13:00)	2022.12.06. (13:00~16:00)	2022.12.07. (10:00~13:00)	2022.12.07. (13:00~16:00)
개찰기간	2022.12.06. (09:00)	2022.12.06. (09:00)	2022.12.07. (09:00)	2022.12.07. (09:00)	2022.12.08. (09:00)	2022.12.08. (09:00)

□ 입찰가격

□ 1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138,500,000	323,180,000		461,680,000	
2	101	102	138,500,000	323,180,000		461,680,000	
3	101	201	138,500,000	323,180,000		461,680,000	
4	101	301	148,600,000	346,720,000		495,320,000	
5	101	302	148,600,000	346,720,000		495,320,000	
6	101	402	165,650,000	386,510,000		552,160,000	
7	102	비01	421,310,000	631,970,000	63,197,000	1,116,477,000	
8	102	202	139,900,000	326,420,000		466,320,000	
9	102	301	152,080,000	354,840,000		506,920,000	
10	102	302	152,080,000	354,840,000		506,920,000	
11	103	비01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2	103	비02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3	103	비03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4	103	비04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5	103	비05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6	103	비06	547,520,000	821,280,000	82,128,000	1,450,928,000	
17	103	103	137,110,000	319,930,000		457,040,000	
18	103	105	137,110,000	319,930,000		457,040,000	
19	103	201	133,980,000	312,620,000		446,600,000	
20	103	203	147,200,000	343,480,000		490,680,000	
21	103	204	147,200,000	343,480,000		490,680,000	
22	103	205	147,200,000	343,480,000		490,680,000	
23	103	302	156,250,000	364,590,000		520,840,000	
24	103	305	156,250,000	364,590,000		520,840,000	
25	103	402	169,130,000	394,630,000		563,760,000	
26	103	403	169,130,000	394,630,000		563,760,000	
27	103	404	169,130,000	394,630,000		563,760,000	
28	103	405	169,130,000	394,630,000		563,760,000	
29	104	501	146,510,000	341,850,000		488,360,000	
30	105	203	115,540,000	269,580,000		385,120,000	
31	105	205	90,830,000	211,930,000		302,760,000	
32	105	504	146,510,000	341,850,000		488,360,000	
33	106	201	118,670,000	276,890,000		395,560,000	
34	106	305	123,190,000	287,450,000		410,640,000	
35	106	405	132,940,000	310,180,000		443,120,000	
36	106	501	149,640,000	349,160,000		498,800,000	
37	106	502	149,640,000	349,160,000		498,800,000	
38	106	504	149,640,000	349,160,000		498,800,000	
39	107	202	113,450,000	264,710,000		378,160,000	
40	107	203	121,800,000	284,200,000		406,000,000	
41	107	204	107,180,000	250,100,000		357,280,000	
42	107	205	123,190,000	287,450,000		410,640,000	
43	107	206	117,970,000	275,270,000		393,240,000	
44	107	304	122,840,000	286,640,000		409,480,000	
45	107	402	132,940,000	310,180,000		443,120,000	
46	107	403	128,060,000	298,820,000		426,880,000	
47	107	503	135,020,000	315,060,000		450,080,000	
48	107	506	149,290,000	348,350,000		497,640,000	
합계			9,442,510,000	18,943,850,000	555,965,000	28,942,325,000	

□ 2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124,650,000	290,860,000		415,510,000	
2	101	102	124,650,000	290,860,000		415,510,000	
3	101	201	124,650,000	290,860,000		415,510,000	
4	101	301	133,740,000	312,040,000		445,780,000	
5	101	302	133,740,000	312,040,000		445,780,000	
6	101	402	149,080,000	347,850,000		496,930,000	
7	102	비01	379,170,000	568,770,000	56,877,000	1,004,817,000	
8	102	202	125,910,000	293,770,000		419,680,000	
9	102	301	136,870,000	319,350,000		456,220,000	
10	102	302	136,870,000	319,350,000		456,220,000	
11	103	비01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2	103	비02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3	103	비03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4	103	비04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5	103	비05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6	103	비06	492,760,000	739,150,000	73,915,000	1,305,825,000	
17	103	103	123,390,000	287,930,000		411,320,000	
18	103	105	123,390,000	287,930,000		411,320,000	
19	103	201	120,580,000	281,350,000		401,930,000	
20	103	203	132,480,000	309,130,000		441,610,000	
21	103	204	132,480,000	309,130,000		441,610,000	
22	103	205	132,480,000	309,130,000		441,610,000	
23	103	302	140,620,000	328,130,000		468,750,000	
24	103	305	140,620,000	328,130,000		468,750,000	
25	103	402	152,210,000	355,160,000		507,370,000	
26	103	403	152,210,000	355,160,000		507,370,000	
27	103	404	152,210,000	355,160,000		507,370,000	
28	103	405	152,210,000	355,160,000		507,370,000	
29	104	501	131,850,000	307,660,000		439,510,000	
30	105	203	103,980,000	242,620,000		346,600,000	
31	105	205	81,740,000	190,730,000		272,470,000	
32	105	504	131,850,000	307,660,000		439,510,000	
33	106	201	106,800,000	249,200,000		356,000,000	
34	106	305	110,870,000	258,700,000		369,570,000	
35	106	405	119,640,000	279,160,000		398,800,000	
36	106	501	134,670,000	314,240,000		448,910,000	
37	106	502	134,670,000	314,240,000		448,910,000	
38	106	504	134,670,000	314,240,000		448,910,000	
39	107	202	102,100,000	238,230,000		340,330,000	
40	107	203	109,620,000	255,780,000		365,400,000	
41	107	204	96,460,000	225,090,000		321,550,000	
42	107	205	110,870,000	258,700,000		369,570,000	
43	107	206	106,170,000	247,740,000		353,910,000	
44	107	304	110,550,000	257,970,000		368,520,000	
45	107	402	119,640,000	279,160,000		398,800,000	
46	107	403	115,250,000	268,930,000		384,180,000	
47	107	503	121,510,000	283,550,000		405,060,000	
48	107	506	134,360,000	313,510,000		447,870,000	
합계			8,498,040,000	17,049,260,000	500,367,000	26,047,667,000	

□ 3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112,180,000	261,770,000		373,950,000	
2	101	102	112,180,000	261,770,000		373,950,000	
3	101	201	112,180,000	261,770,000		373,950,000	
4	101	301	120,360,000	280,830,000		401,190,000	
5	101	302	120,360,000	280,830,000		401,190,000	
6	101	402	134,170,000	313,060,000		447,230,000	
7	102	비01	341,250,000	511,890,000	51,189,000	904,329,000	
8	102	202	113,310,000	264,390,000		377,700,000	
9	102	301	123,180,000	287,410,000		410,590,000	
10	102	302	123,180,000	287,410,000		410,590,000	
11	103	비01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2	103	비02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3	103	비03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4	103	비04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5	103	비05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6	103	비06	443,480,000	665,230,000	66,523,000	1,175,233,000	
17	103	103	111,050,000	259,130,000		370,180,000	
18	103	105	111,050,000	259,130,000		370,180,000	
19	103	201	108,520,000	253,210,000		361,730,000	
20	103	203	119,230,000	278,210,000		397,440,000	
21	103	204	119,230,000	278,210,000		397,440,000	
22	103	205	119,230,000	278,210,000		397,440,000	
23	103	302	126,550,000	295,310,000		421,860,000	
24	103	305	126,550,000	295,310,000		421,860,000	
25	103	402	136,980,000	319,640,000		456,620,000	
26	103	403	136,980,000	319,640,000		456,620,000	
27	103	404	136,980,000	319,640,000		456,620,000	
28	103	405	136,980,000	319,640,000		456,620,000	
29	104	501	118,660,000	276,890,000		395,550,000	
30	105	203	93,580,000	218,350,000		311,930,000	
31	105	205	73,560,000	171,650,000		245,210,000	
32	105	504	118,660,000	276,890,000		395,550,000	
33	106	201	96,120,000	224,280,000		320,400,000	
34	106	305	99,780,000	232,830,000		332,610,000	
35	106	405	107,670,000	251,240,000		358,910,000	
36	106	501	121,200,000	282,810,000		404,010,000	
37	106	502	121,200,000	282,810,000		404,010,000	
38	106	504	121,200,000	282,810,000		404,010,000	
39	107	202	91,890,000	214,400,000		306,290,000	
40	107	203	98,650,000	230,200,000		328,850,000	
41	107	204	86,810,000	202,580,000		289,390,000	
42	107	205	99,780,000	232,830,000		332,610,000	
43	107	206	95,550,000	222,960,000		318,510,000	
44	107	304	99,490,000	232,170,000		331,660,000	
45	107	402	107,670,000	251,240,000		358,910,000	
46	107	403	103,720,000	242,030,000		345,750,000	
47	107	503	109,350,000	255,190,000		364,540,000	
48	107	506	120,920,000	282,150,000		403,070,000	
합계			7,648,020,000	15,344,100,000	450,327,000	23,442,447,000	

□ 4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100,960,000	235,590,000		336,550,000	
2	101	102	100,960,000	235,590,000		336,550,000	
3	101	201	100,960,000	235,590,000		336,550,000	
4	101	301	108,320,000	252,740,000		361,060,000	
5	101	302	108,320,000	252,740,000		361,060,000	
6	101	402	120,750,000	281,750,000		402,500,000	
7	102	비01	307,120,000	460,700,000	46,070,000	813,890,000	
8	102	202	101,970,000	237,950,000		339,920,000	
9	102	301	110,860,000	258,660,000		369,520,000	
10	102	302	110,860,000	258,660,000		369,520,000	
11	103	비01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2	103	비02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3	103	비03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4	103	비04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5	103	비05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6	103	비06	399,130,000	598,700,000	59,870,000	1,057,700,000	
17	103	103	99,940,000	233,210,000		333,150,000	
18	103	105	99,940,000	233,210,000		333,150,000	
19	103	201	97,660,000	227,880,000		325,540,000	
20	103	203	107,300,000	250,380,000		357,680,000	
21	103	204	107,300,000	250,380,000		357,680,000	
22	103	205	107,300,000	250,380,000		357,680,000	
23	103	302	113,890,000	265,770,000		379,660,000	
24	103	305	113,890,000	265,770,000		379,660,000	
25	103	402	123,280,000	287,670,000		410,950,000	
26	103	403	123,280,000	287,670,000		410,950,000	
27	103	404	123,280,000	287,670,000		410,950,000	
28	103	405	123,280,000	287,670,000		410,950,000	
29	104	501	106,790,000	249,200,000		355,990,000	
30	105	203	84,220,000	196,510,000		280,730,000	
31	105	205	66,200,000	154,480,000		220,680,000	
32	105	504	106,790,000	249,200,000		355,990,000	
33	106	201	86,500,000	201,850,000		288,350,000	
34	106	305	89,800,000	209,540,000		299,340,000	
35	106	405	96,900,000	226,110,000		323,010,000	
36	106	501	109,080,000	254,520,000		363,600,000	
37	106	502	109,080,000	254,520,000		363,600,000	
38	106	504	109,080,000	254,520,000		363,600,000	
39	107	202	82,700,000	192,960,000		275,660,000	
40	107	203	88,780,000	207,180,000		295,960,000	
41	107	204	78,120,000	182,320,000		260,440,000	
42	107	205	89,800,000	209,540,000		299,340,000	
43	107	206	85,990,000	200,660,000		286,650,000	
44	107	304	89,540,000	208,950,000		298,490,000	
45	107	402	96,900,000	226,110,000		323,010,000	
46	107	403	93,340,000	217,820,000		311,160,000	
47	107	503	98,410,000	229,670,000		328,080,000	
48	107	506	108,820,000	253,930,000		362,750,000	
합계			6,883,040,000	13,809,420,000	405,290,000	21,097,750,000	

□ 5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90,860,000	212,030,000		302,890,000	
2	101	102	90,860,000	212,030,000		302,890,000	
3	101	201	90,860,000	212,030,000		302,890,000	
4	101	301	97,480,000	227,460,000		324,940,000	
5	101	302	97,480,000	227,460,000		324,940,000	
6	101	402	108,670,000	253,570,000		362,240,000	
7	102	비01	276,400,000	414,630,000	41,463,000	732,493,000	
8	102	202	91,770,000	214,150,000		305,920,000	
9	102	301	99,770,000	232,790,000		332,560,000	
10	102	302	99,770,000	232,790,000		332,560,000	
11	103	비01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2	103	비02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3	103	비03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4	103	비04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5	103	비05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6	103	비06	359,210,000	538,830,000	53,883,000	951,923,000	
17	103	103	89,940,000	209,880,000		299,820,000	
18	103	105	89,940,000	209,880,000		299,820,000	
19	103	201	87,890,000	205,090,000		292,980,000	
20	103	203	96,570,000	225,340,000		321,910,000	
21	103	204	96,570,000	225,340,000		321,910,000	
22	103	205	96,570,000	225,340,000		321,910,000	
23	103	302	102,500,000	239,190,000		341,690,000	
24	103	305	102,500,000	239,190,000		341,690,000	
25	103	402	110,950,000	258,900,000		369,850,000	
26	103	403	110,950,000	258,900,000		369,850,000	
27	103	404	110,950,000	258,900,000		369,850,000	
28	103	405	110,950,000	258,900,000		369,850,000	
29	104	501	96,110,000	224,280,000		320,390,000	
30	105	203	75,790,000	176,850,000		252,640,000	
31	105	205	59,580,000	139,030,000		198,610,000	
32	105	504	96,110,000	224,280,000		320,390,000	
33	106	201	77,850,000	181,660,000		259,510,000	
34	106	305	80,820,000	188,580,000		269,400,000	
35	106	405	87,210,000	203,490,000		290,700,000	
36	106	501	98,170,000	229,060,000		327,230,000	
37	106	502	98,170,000	229,060,000		327,230,000	
38	106	504	98,170,000	229,060,000		327,230,000	
39	107	202	74,430,000	173,660,000		248,090,000	
40	107	203	79,900,000	186,460,000		266,360,000	
41	107	204	70,300,000	164,080,000		234,380,000	
42	107	205	80,820,000	188,580,000		269,400,000	
43	107	206	77,390,000	180,590,000		257,980,000	
44	107	304	80,580,000	188,050,000		268,630,000	
45	107	402	87,210,000	203,490,000		290,700,000	
46	107	403	84,000,000	196,030,000		280,030,000	
47	107	503	88,560,000	206,700,000		295,260,000	
48	107	506	97,930,000	228,530,000		326,460,000	
합계			6,194,560,000	12,428,290,000	364,761,000	18,987,611,000	

□ 6회차

연번	동	호	금액(원)				비고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합계	
1	101	101	81,770,000	190,820,000		272,590,000	
2	101	102	81,770,000	190,820,000		272,590,000	
3	101	201	81,770,000	190,820,000		272,590,000	
4	101	301	87,730,000	204,710,000		292,440,000	
5	101	302	87,730,000	204,710,000		292,440,000	
6	101	402	97,800,000	228,210,000		326,010,000	
7	102	비01	248,760,000	373,160,000	37,316,000	659,236,000	
8	102	202	82,590,000	192,730,000		275,320,000	
9	102	301	89,790,000	209,510,000		299,300,000	
10	102	302	89,790,000	209,510,000		299,300,000	
11	103	비01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2	103	비02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3	103	비03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4	103	비04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5	103	비05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6	103	비06	323,280,000	484,940,000	48,494,000	856,714,000	
17	103	103	80,940,000	188,890,000		269,830,000	
18	103	105	80,940,000	188,890,000		269,830,000	
19	103	201	79,100,000	184,580,000		263,680,000	
20	103	203	86,910,000	202,800,000		289,710,000	
21	103	204	86,910,000	202,800,000		289,710,000	
22	103	205	86,910,000	202,800,000		289,710,000	
23	103	302	92,250,000	215,270,000		307,520,000	
24	103	305	92,250,000	215,270,000		307,520,000	
25	103	402	99,850,000	233,010,000		332,860,000	
26	103	403	99,850,000	233,010,000		332,860,000	
27	103	404	99,850,000	233,010,000		332,860,000	
28	103	405	99,850,000	233,010,000		332,860,000	
29	104	501	86,490,000	201,850,000		288,340,000	
30	105	203	68,210,000	159,160,000		227,370,000	
31	105	205	53,620,000	125,120,000		178,740,000	
32	105	504	86,490,000	201,850,000		288,340,000	
33	106	201	70,060,000	163,490,000		233,550,000	
34	106	305	72,730,000	169,720,000		242,450,000	
35	106	405	78,480,000	183,140,000		261,620,000	
36	106	501	88,350,000	206,150,000		294,500,000	
37	106	502	88,350,000	206,150,000		294,500,000	
38	106	504	88,350,000	206,150,000		294,500,000	
39	107	202	66,980,000	156,290,000		223,270,000	
40	107	203	71,910,000	167,810,000		239,720,000	
41	107	204	63,270,000	147,670,000		210,940,000	
42	107	205	72,730,000	169,720,000		242,450,000	
43	107	206	69,650,000	162,530,000		232,180,000	
44	107	304	72,520,000	169,240,000		241,760,000	
45	107	402	78,480,000	183,140,000		261,620,000	
46	107	403	75,600,000	176,420,000		252,020,000	
47	107	503	79,700,000	186,030,000		265,730,000	
48	107	506	88,130,000	205,670,000		293,800,000	
합계			5,574,890,000	11,085,280,000	328,280,000	17,088,450,000	

※ 각 호실의 최초 공매예정가는 감정평가액 대비 116%로 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 각 회차별 공매가격은 본 최초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10%씩 차감된 금액으로 산정되나, 호실별 세부 금액은 당사가 정하기로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